

현안분석

2016-05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6-05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 상 윤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Schemes to improve the Penalty
System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연구자 : 이상윤(연구위원)

Lee, Sang-Yoon

2016. 6. 30.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원자력안전법의 경우, 제재가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유형별로 의무 및 벌칙의 부과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제재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관련행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연구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한 벌칙의 부과실태 및 유사법령상 제재유형을 조사·분석을 통하여 벌칙의 유형·경중에 대한 적정성을 진단하고, 의무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나뉠대로의 처벌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과징금 등의 주요내용 및 그 부과실태에 관하여 살펴봄
- 제3장에서는 에너지관계법 중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대표적인 법령인 가스관계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등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을 분석함

- 제4장에서는 이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헌법적합성 강화, 처벌수위의 적정화, 처벌체계의 합리화 등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한 후,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원자력안전법 위반자에게 적정한 벌칙을 부과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기준 체계 확립에 기여함

▶▶ 주제어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형벌, 행정질서법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The lack of a principle for the imposition of a duty or for the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with regard to the types of violation for which the Nuclear Safety Act imposes no punishment or a minor penalty has diminished consistency in penalties and is anticipated to undermine practical effect of related administration.
- In an effort to address such problems,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reasonableness of the types and magnitude of penalties by surveying and analyzing the present situation of penalties imposed for violations of the Nuclear Safety Act and the types of penalties under similar statutes and to propose standards for penalty provisions reasonably applicable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breach of a duty.

II . Main Contents

- Chapter II looks into major provisions of the Nuclear Safety Act concerning administrative punishments, administrative order penalties, penalty surcharges, etc.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application of such provisions in order to dig out problems of penalty provisions of the Nuclear Safety Act.

- Chapter III analyzes penalty provisions in similar legislation cases, including gas-related acts,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the Oil Pipeline Safety Control Act, which are representative statutes on safety control, among energy-related laws.
- Chapter IV comprehensively reviews the issues analyzed as above and then suggests schemes to improve the penalty system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constitutional validity, the reasonableness of the level of penalties, and the rationalization of the penalty system.
- Chapter V comprehensively summarizes and rearranges the issues and proposals discussed as above and then presents problems in the penalty system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which have not been addressed in the main text, and the future direction i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II. Expected Effect

-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and the system for nuclear safety, on which people can rely, by imposing reasonable penalties to those who violate the Nuclear Safety Act so as to secure practical effect of regulation.

➤ **Key Words:** Nuclear Safety Act, penalty provisions of the Nuclear Safety Act,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dministrative punishment, administrative order penalty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9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0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1
제 2 장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개관	13
제 1 절 벌칙규정의 주요내용	13
1. 행정형벌	13
2. 행정질서벌	19
3. 과징금	22
제 2 절 벌칙규정의 운용실태	26
1. 개 관	26
2. 과징금 처분현황	27
3. 과태료 처분현황	32

제 3 장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의 분석	39
제 1 절 가스 관계법상 벌칙규정	39
1. 도시가스사업법	39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9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58
제 2 절 기타 입법례상 벌칙규정	71
1. 위험물 안전관리법	71
2. 송유관 안전관리법	77
제 4 장 벌칙규정의 종합검토와 개선방안	81
제 1 절 행정형벌 개선방안	81
1. 헌법적합성의 강화	81
2. 처벌수위의 적정화	85
제 2 절 벌칙운용의 합리화	90
1. 처벌체계의 문제점	90
2. 처벌의 합리화방안	94
3. 처벌의 체계화방안	101
제 5 장 결 론	105
참 고 문 헌	10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행정상 위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행정법령에서는 해당 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행정법령상 “형벌법규의 과잉현상”¹⁾이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도 법령마다 각각 다른 법정형이 규정됨으로서, 벌칙규정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필요하여 소관법령을 제·개정할 때에 다른 유사입법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조항에 관한 면밀한 비교·분석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칙은 국민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제한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부과 원칙 수립과 일관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원자력안전법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전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제113조-제121조)을 두어, 관련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예컨대, 원자력안전법 제10조 및 제30조에서는 발전용원자로와 연구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30조

1) 이천현·권수진, 행정형벌의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무부 용역보고서), 2009, 2면.

의2에서는 발전용원자로와 연구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신청할 때,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해체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은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운영상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6조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8조 제2호).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11조(허가기준) 제4호에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품질보증계획서의 준수의무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제재가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형별로 의무 및 벌칙의 부과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제재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관련행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원자력사고의 대규모성 및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원자력 안전행정의 실효성 확보는 국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원자력안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의 내용적·체계적 적정성을 제고하는 것은 바로 원자력 안전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한 벌칙의 부과실태 및 유사법령상 제재유형을 조사·분석을 통하여 벌칙의 유형·경중에 대한 적정성을 진단하고, 의무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처벌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원자력안전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유사입법례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의 제명에 “안전”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법률, 예컨대 가스관계법 등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하여, 우선 원자력안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벌칙의 부과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가스관계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해당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유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의 유형·경중에 대한 적정성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원자력안전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벌칙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첫째, 행정법령상 벌칙제도에 관한 선행 논문 및 보고서의 분석, 관련법령의 내용 및 체계 분석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의 유형·경중에 대한 적정성을 진단하고, 유사법률 위반 시 제재유형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 구체적인 법령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입법론적 연구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셋째,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의 부과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법령 개선방안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워크숍 또는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

제1장 서론

건을 수렴함으로써, 개선방안의 실무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 연구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제 2 장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개관

제 1 절 벌칙규정의 주요내용

1. 행정형벌

(1) 개 관

일반적으로 행정형벌이란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하여져 있는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정지, 벌금, 구류, 과료 및 몰수)을 과하는 것”²⁾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행정벌로서의 행정형벌은 행정법규가 정하고 있는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벌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원자력 안전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에서도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 다양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상 이러한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에 따라 부과되므로,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 미수범 및 법인의 처벌 여부가 문제로 되며, 이로부터 원자력안전법은 양벌규정 및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주요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원자로의 파괴

원자력안전법 제113조에서는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쟁·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이러한 죄를 범

2)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제14판), 법문사, 2010, 500면.

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상의 죄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며(제3항), 이상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 또는 선동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3) 원자로 등의 부당조작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제1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성물질이나 원자로 등을 부당하게 조작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고, 결국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원자력안전법 제114조에서는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제1항)에 처하도록 하고, 이러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4) 비밀누설

원자력에 관한 비밀이 대내·외적으로 누설되는 경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에서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법의 시행목적 외에는 비밀을 이용할 수 없도록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자력안전법 제115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제108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 허가·명령 등 위반행위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과 판독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발전용 원자로를 건설·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 건설공사를 공사를 정지하거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116조에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 판독업무자 등의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제1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제2호),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정지명령 등을 위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제3호)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변경허가·승인 등 위반행위

원자력안전법 제117조에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등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1호), 부지 및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 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제2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원자력안전법상 각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제3호), 방사선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한구역에의 출입 또는 거주제한 명령 등을 위반한 자(제4호), 핵원료물질사용자에 대한 기술기준 시정 또는 보완 명령 등을 위반한 자(제5호), 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투기처분 금지 등을 위반한 자(제6호), 안전관련설비의 허가기준 부적합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118조에서는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자, 주기적 안전성평가결과 등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위반한 자, 계량관리규정 등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붙여진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실제 일일작업량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원자력안전법상 위반행위별 행정형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원자력안전법상 위반행위별 행정형벌³⁾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113	① 원자로 파괴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침해 또는 기타 공공안전의 문란	•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전쟁·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위의 행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	• 미수범 처벌

3) 원자력안전법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 또는 선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14	①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의 부당 조작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 초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제1항의 죄로 인한 사람의 사망(결과적 가중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15	• 업무상 취득한 비밀누설(§108)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116	1.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않고 한 사용·소지·사업 등의 행위(제10조제1항 전단·제20조제1항 전단·제30조제1항 전단·제30조의2제1항 전단·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제45조제1항 전단·제53조제1항 전단·제54조제1항·제63조제1항 전단 또는 제78조제1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2. 필요한 안전조치명령 위반(제27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41조·제50조제2항·제68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3. 사업 또는 업무정지명령 위반(제17조제1항·제24조제1항·제32조·제38조제1항·제48조·제57조제1항·제59조의2제3항·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위반)	
117	1.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의 변경 또는 승인 없이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제10조제1항 후단·제20조제1항 후단·제30조제1항 후단·제30조의2제1항 후단·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제45조제1항 후단·제53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제1항 후단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제 2 장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개관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p>2. 공사범위 위반행위 등(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42조제1항 전단·제60조제1항 전단·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 위반)</p> <p>3.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행위(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37조제1항·제47조제1항·제56조제1항·제65조제1항·제75조제1항·제77조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제98조제2항 및 제4항 위반)</p> <p>4. 출입·거주 제한명령 위반행위(제89조제2항 및 제5항 위반)</p> <p>5.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행위(제31조제3항·제52조제3항·제59조제2항·제59조의2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 위반)</p> <p>6. 처분제한 위반행위(제70조제1항 및 제2항·제77조제2항·제84조제1항 본문·제94조·제96조 또는 제97조 위반)</p> <p>7. 보고의무 위반행위 및 거짓 보고행위(제15조의3[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15조의4제2항·제74조제2항·제92조제1항·제92조의2·제98조제1항 또는 제104조제1항 위반)</p>	
118	1. 시정·보완 명령 위반(제15조의4제3항·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포함]·제28조제7항[제34조 및 제4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37조제2항·제47조제2항·제56조제2항·제65조제2항·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 위반)	
	2. 제출 의무 위반행위(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40조제1항·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 위반)	
	3. 변경승인 위반행위(제15조제1항 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위반)	
	4. 허가 또는 지정 조건 위반행위(제99조제1항 위반)	
	5. 보고의무 위반 및 거짓 보고행위(제59조의2제6항 위반)	

2. 행정질서벌

(1) 개 관

행정벌의 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정질서벌이란 “일반사회의 법익 또는 행정목적에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상 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가해지는 제재”⁴⁾를 의미하고, 결국 행정질서벌은 일종의 금전벌로서의 과태료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과태료를 “행정법상의 질서벌적

4) 정환삼·양맹호·김승수·윤성원·이대성, 원자력 관련 법률의 벌칙규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2012, 14면.

인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바, 행정법상 의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목적에 침해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⁵⁾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정질서벌은 행정형벌과는 달리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질서벌을 부과·징수할 때의 일반적 절차를 규정할 뿐이고, 대부분의 행정질서벌은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에서도 다양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내 용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핵연료주기사업자 및 그 종업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자,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판독업무자에 대한 등록기준의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자,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 등에 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조작한 자,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

5) 박영도·강문수,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7면.

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위반행위별 행정질서벌(과태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원자력안전법상 위반행위별 과태료6)

조	위반행위	과태료
119 ①	1. 신고위반행위 또는 거짓신고행위(제10조제1항 단서·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20조제1항 단서·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30조제1항 단서·제30조의2제1항 단서·제31조제1항·제33조·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42조제1항 단서·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45조제1항 단서·제52조제1항·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제54조제2항·제60조제1항 단서·제63조제1항 단서·제71조·제76조제1항 단서·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 위반)	* 3천만 원 이하
	2. 안전관리규정 준수 의무 위반행위(제40조제2항·제50조제1항 및 제3항·제52조제2항·제53조의2제4항 및 제5항·제59조제1항 및 제3항·제59조의2제7항·제61조·제68조제1항 및 제3항·제70조제3항 및 제4항·제72조·제73조·제74조제1항·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 위반)	
	3. 기록비치 의무 위반 또는 거짓기록행위(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25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39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 또는 제82조 위반)	
	4. 시정·보완명령 위반 행위(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조	위반행위	과태료
	5. 변경승인 위반 행위(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42조제1항 후단·제60조제1항 후단·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 위반)	
	6. 성능검증 관련서류 위조·조작 행위(제15조의2 위반)	
	7. 교육의무 위반 행위(제106조제3항 위반)	

3. 과징금

(1) 개 관

위에서 서술한 행정벌로서의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과 같이 전통적인 제재수단 외에도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과징금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인·허가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공표제도 등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원자력안전법상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과징금에 관하여는 합의된 개념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현행법령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라 하겠다.⁷⁾ 과징금은 당초 “행정법규 또는 행정법상 의무의 위반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6) 원자력안전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7)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12월에 제정된 공정거래법(법률 제3320) 제6조에서 최초로 과징금이 도입된 후, 각종 법령에서 다양한 형태로 도입·전개되고 있다. 강문수·이순태·나채준, 과징금·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원자력안전위원회(정책연구보고서), 2013, 21-22면 참조.

있어서 행정벌 만으로는 그 위반을 막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행정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행정법규위반행위를 막는 효과⁸⁾를 기대하면서 도입되었다. 그 후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과징금의 유형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제도, 즉 변형과징금제도”⁹⁾를 들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의 경우도 행정질서벌이자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태료와 함께 과징금을 도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변형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제17조, 제47조, 제57조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제24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제81조 제2항 등에서 이러한 조항을 각각 인용하고 있다.

(2) 내 용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서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갈음하여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3항). 원자력안전법 제24조에서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운영의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2항), 제38조에서 핵연료주기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2항), 제66조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2항)에서 각각 제17조를 준용하고 있다.

8) 강문수·이순태·나채준, 과징금·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전계), 22면.

9) 강문수·이순태·나채준, 과징금·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전계), 22면.

원자력안전법 제48조에서도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3항).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57조에서도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3항). 제81조에서는 판독업무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제5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상에서 서술한 원자력안전법상 위반행위별 행정질서벌(과태료)과 과징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원자력안전법상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현황¹⁰⁾

구 분	과징금(1차) (만원)	과태료(1차) (만원)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신) 3개월, 45백 (허) 허가취소	(허·신) 3백
▪ 허가 일부터 1년 내에 사업 미 개시 또는 1년 이상 중단	(생·관) 2개월, 50백 (사) 2개월, 40백 (이) 2개월, 80백	
▪ 제53조제1항 전단 위반, 미 허가		
▪ 제57조제1항 업무정지 위반, 사업·업무 계속		
▪ 제53조제1항 후단 위반, 미 변경 허가	(생·관) 3개월, 75백 (사) 3개월, 60백 (이) 3개월, 120백	
▪ 제53조제1항 단서 위반, 미 변경 신고		(허) 3백
▪ 제53조제2항 후단 위반, 미 변경 신고	(신) 2개월, 30백	(신) 3백
▪ 제5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	(신) 3개월, 45백	

10)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자료(수정 후 인용).

제 1 절 벌칙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과징금(1차) (만원)	과태료(1차) (만원)
제1호·제2호·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 허가취소	
▪ 제55조제1항의 허가기준에 미달	(생·판) 2개월, 50백 (사) 2개월, 40백 (이) 2개월, 80백	
▪ 제5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미 수검		
▪ 제98조제2항·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		
▪ 제56조제2항 위반, 검사 보완명령 불이행	(생·판) 2개월, 50백 (사) 2개월, 40백 (이) 2개월, 80백	
▪ 제98조제1항·3항 위반, 검사를 위한 보고명령 및 보완명령 불이행	(신) 2개월, 30백 (※ 제98조만 해당)	
▪ 제59조제1항 위반, 기술기준 미 준수		(허) 3백
▪ 제92조제1항 위반, 방사선장해 발생 등 미 보고		
▪ 제59조제2항 위반,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신) 3개월, 45백 (생·판) 6개월, 150백 (사) 6개월, 120백 (이) 6개월, 240백	
▪ 제92조제2항 위반, 방사선장해방지 명령 불이행		
▪ 제59조제3항 위반, 안전관리규정 미 준수	(생·판) 2개월, 50백 (사) 2개월, 40백 (이) 2개월, 80백	(허) 3백
▪ 제106조제1항 위반, 교육·훈련 미 실시	(신) 1개월, 15백 (※ 제106조만 해당)	(허·신) 2백
▪ 제70조제1항·제2항 위반, 방사성폐기물 무단 처분	(신) 2개월, 30백 (생·판) 2개월, 50백 (사) 2개월, 40백 (이) 2개월, 80백	
▪ 제70조제3항·제4항 위반, 방사성폐기물 부적합 처분	(신) 1개월, 15백 (생·판) 1개월, 25백 (사) 1개월, 20백 (이) 1개월, 40백	(허·신) 3백
▪ 제58조 위반, 건강진단·피폭·선량 측정기록 누락		(허) 2백
▪ 제60조제1항 전단 위반, 설계 등 미 승인		
▪ 제60조제1항 후단 위반, 미 변경 승인		(제·수) 3백
▪ 제60조제1항 단서 위반, 미 변경 신고, 거짓 신고		(제·수) 2백

제 2 장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개관

구 분	과징금(1차) (만원)	과태료(1차) (만원)
▪ 제61조 위반, 설계승인 등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한 경우		(허·신·제·수) 3백
▪ 제91조 위반, 선량측정·건강진단·피폭관리 불이행		(허·신) 4백
▪ 제94조 위반, 방사성물질 등 무단 소지·양도 ▪ 제96조 위반, 18세 미만 방사선취급	(신) 2개월, 30백 (생·판) 2개월, 50백 (사) 2개월, 40백 (이) 2개월, 80백	
▪ 제95조제1항 위반, 사업폐지조치 미신고		(허·신) 3백
▪ 법 제99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가된 허가조건 위반	(생·판) 1개월, 25백 (사) 1개월, 20백 (이) 1개월, 40백	

※(신)신고사용자, (허)허가사용자, (생)생산허가자, (판)판매허가자, (사)사용허가자, (이)이동사용허가자, (제)제작허가자, (수)수입허가자

제 2 절 벌칙규정의 운용실태

1. 개 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하여 제출 받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10월 26일 출범한 이래 2015년 6월 30일까지 상당한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확보 미흡, 일시적 사용장소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불이행,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약 100 건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방사선측정기 교정 미실시, 방사성물질 운반서류 미작성, 건강진단 부적절 등을 이유로 수백 건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2014년에 품질보증계획서 변경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 및 이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위반으로 300만 원의 과태료 등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

으로 고리1호기 EDG 복구조치 미이행 및 핵연료 인출에 따라 9,000만 원의 과징금 등을 처분하였고, 고시1호기 사건방생관련 정보기록의 누락으로 300만 원의 과태료 등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한 2011년 10월 26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법상 벌칙 등 처분현황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기초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전술한 징역, 벌금 등의 행정형벌을 부과(형사고발)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과징금 처분현황

첫째, 2012년도의 경우, 8월 16일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소지자 확보 미흡을 이유로 4백만 원 외 2건을 처분하였고, 11월 8일에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위반을 이유로 5백만 원 외 1건을 처분하였으며, 12월 27일에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및 출입관리 미흡을 이유로 1천만 원 외 3건을 각각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도의 경우, 5월 6일에 허가기준(인력) 미달을 이유로 4백만 원 외 11건을 처분하였고, 8월 29일에도 역시 허가기준(인력) 미달을 이유로 750만 원 외 2건을 처분하였으며, 11월 이후에 개인선량계 등 미착용을 이유로 1천만 원 외 2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1월 10일부터 5월말까지 방사성동위원소 허가한도 초과 취득을 이유로 750만 원 외 9건을 처분하였고, 6월 13일에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1천만 원 외 5건을 처분하였으며, 9월 15일 이후에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수행 부적합을 이유로 1천만 원 외 8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도의 경우, 3월 22일에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수행 부적합을 이유로 1,500만 원 외 7건을 처분하였고, 3월 30일에도 같은 이유로 1,500만 원 외 5건을 처분하였으며, 6월 2일에 방사

제 2 장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개관

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을 이유로 4백만 원 외 5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2014년 9월 12일에 원자로상부구조물(IHA)을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에 제작·설치(2009년~2011년)함에 있어 품질승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반규격품(재료 또는 부품)을 IHA 제작에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설계문서에서 정한 등급 및 규격에 맞지 않는 IHA를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5,00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2년 7월 31일에 고리1호기 EDG 복구조치 미이행 및 핵연료 인출을 이유로 9,00만 원의 과징금, 2013년 10월 4일에 고리1호기 EDG 고의차단을 이유로 4,500만 원의 과징금, 2014년 1월 21일에 한빛2호기 SG 용접계획서 미제출을 이유로 4,500만 원의 과징금, 2015년 6월 1일에 고리2호기 격납건물 국부누설률시험 미실시를 이유로 3,000만 원의 과징금 등 총 7건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원자력안전법상 과징금의 주요 처분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원자력안전법상 과징금 처분현황(2011.10.26~2015.6.30)¹¹⁾

부과일자	위반내용	위반조항	금액 (만원)
2014-09-12	원자로상부구조물(IHA)을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에 제작·설치(2009년~2011년)함에 있어 품질승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반규격품(재료 또는 부품)을 IHA 제작에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설계문서에서 정한 등급 및 규격에 맞지 않는 IHA를 설치	제11조 제2호 제21조 제2호	5,000
2015-03-24	한울 1호기 전원공급설비 볼트체결수 미준수 및 내진성능 불만족	제21조	3,750

11)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자료(수정 후 인용).

제 2 절 벌칙규정의 운용실태

부과일자	위반내용	위반조항	금액 (만원)
2012-07-31	고리 1호기 EDG 복구조치 미이행 및 핵연료 인출	제26조	9,000
2013-10-04	고리 1호기 EDG 고의차단	제26조	4,500
2014-01-22	한빛 2호기 SG 용접계획서 미제출	제26조	4,500
2015-06-01	고리 2호기 격납건물 국부누설률시험 미실시	제26조	3,000
2012-08-16	일시적 사용장소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제53조	1,000
2012-11-08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허가 기준 위반	제53조	750
2013-05-06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서 부적합	제53조	750
2013-05-06	허가한도 초과 취득	제53조	1,125
2013-05-06	일시적사용장소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제53조	750
2013-05-06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등	제53, 58, 59조	750
2013-11-15	일시적사용장소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제53조	750
2013-12-13	개봉선원(I-131, Tl-201) 연간 허가량 초과 사용	제53조	500
2014-01-10	방사성동위원소 허가한도 초과 취득	제53조	750
2014-02-07	방사선발생장치생산변경허가 미준수	제53조	500
2014-02-07	일시적사용장소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제53조	750
2014-02-07	개봉방사성동위원소(Mo-99) 허가량 초과	제53조	500
2014-06-13	개봉선원(I-123) 연간 허가량 초과사용	제53조	500
2014-09-15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수행 부적합	제53조	1,000
2014-09-15	본사 및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 미 준수	제53조	1,000
2014-09-15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수행 부적합	제53조	1,000
2014-12-23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변경허가 위반	제53조 제1항 후단	750

제 2 장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개관

부과일자	위반내용	위반조항	금액 (만원)
2015-03-22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 수행 부적합	제53조	1,500
2015-03-22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부적합	제53조	1,000
2015-03-22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부적합 등	제53조	1,000
2015-03-22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변경허가 위반	제53조 제1항 후단	1,500
2015-03-30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 수행 부적합	제53조	500
2015-03-30	방사성동위원소(I-125) 연간 허가량 초과 사용	제53조 제1항 후단	500
2015-03-30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 미 준수	제53조	750
2015-03-30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변경허가 위반	제53조 제1항 후단	500
2015-06-02	방사성동위원소 허가량 초과 사용	제53조 제1항 후단	1,500
2015-06-02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무단변경	제53조 제1항	500
2015-06-02	방사선발생장치 변경허가 미 실시	제53조 제1항 후단 제59조 제3항	1,000
2015-06-02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미 준수	제53조 제1항 단서 제59조 제1·3항	6,000
2012-08-1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확보 미흡	제55조	400
2013-05-06	허가기준(인력) 미달	제55조	400
2013-05-06	업무대행 전담인력 부적합	제55조	500
2013-05-06	허가기준(인력기준) 미달	제55조	500
2013-05-06	방사선안전관리자 확보 부적합	제55조	400
2013-08-29	허가기준(인력기준) 미달	제55조	750
2014-01-10	방사선안전관리자 확보 부적합	제55조	500
2014-02-07	등록기준 미달	제55조	250
2014-02-07	등록기준 미달	제55조	500
2014-06-13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 인력기준 위반	제55조	1,000

제 2 절 벌칙규정의 운용실태

부과일자	위반내용	위반조항	금액 (만원)
2015-03-22	허가기준(인력 기준)미달	제55조	400
2015-03-22	확보인력 부적합	제55조	400
2015-03-30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일부 기간 미 확보	제55조 제1항	500
2014-09-15	방사성동위원소등 이동사용허가 시 장비 및 인력기준 미 준수	제55조	1,000
2015-06-02	방사선안전관리자 미확보	제55조 제1항 제4호	400
2015-06-02	방사선원 생산현황 미보고	제58조 제98조 제1항	500
2012-08-16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불이행	제59조	750
2012-11-08	기준준수의무 위반(방사선장해방지조치)	제59조	500
2012-12-27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및 출입관리 미흡	제59조	1,000
2012-12-27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선량계 등 미착용	제59조	1,000
2012-12-27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및 출입관리 미흡	제59조	500
2012-12-27	기준준수의무 위반(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관리 및 조치)	제59조	1,200
2013-05-06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선량계 등 미착용	제59조	750
2013-05-06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이행 부적합	제59조	750
2013-05-06	방사선안전관리 직무이행 부적합	제59조	600
2013-05-06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부적합	제59조	600
2013-08-29	개인선량계 등 미착용 및 방사선량률 측정기 미휴대	제59조	1,000
2013-08-29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및 출입관리 미흡	제59조	1,000
2013-11-08	개인선량계 등 미착용	제59조	1,000
2014-05-13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및 안전 관리규정 미준수	제59조	1,000
2014-05-13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및 안전 관리규정 미준수	제59조	1,000
2014-05-13	이동사용안전관리기술기준및안전관리규정미준수	제59조	1,000

제 2 장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개관

부과일자	위반내용	위반조항	금액 (만원)
2014-06-13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및 안전 관리규정 미준수	제59조	1,500
2014-06-13	이동사용안전관리기술기준및안전관리규정미준수	제59조	1,000
2014-06-13	이동사용안전관리의기술기준및안전관리 규정미준수	제59조	1,000
2014-06-13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및 안전 관리규정 미준수	제59조	1,500
2014-09-15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및 안전 관리규정 미 준수	제59조	1,000
2014-10-13	방사선안전관리 직무 수행 부적합	제59조 제3항	400
2014-12-23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 수행 부적합	제59조 제3항	1,000
2014-12-2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부적합	제59조 제3항	1,000
2015-03-22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미실시 등	제106,91,59조	1,200
2015-03-22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 수행 부적합	제59조	750
2015-03-30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제59조 제3항	400

3. 과태료 처분현황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의 경우, 4월 12일에 방사선측정기 교정 미실시를 이유로 300만 원 외 12건을 처분하였고, 8월 16일에 방사선 작업일지 일부 미작성을 이유로 300만 원 외 27건을 처분하였으며, 10월 29일에 방사선조사기의 일일점검 미흡을 이유로 300만 원 외 2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해 11월 8일에는 판매 분야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75만 원 외 1건을 처분하였으며, 12월 27일에 이동사용 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 기술기준 위반을 이유로 300만 원 외 2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5월 6일에는 업무대행실적 미기록을 이유로 50만 원 외 34건을 처분하였고, 7월 22일에는 건강진단 미실시를 이유로 150만 원 외 9건을 처분하였으며, 7월 25일 에는 폐기선원 관리 부적합을 이유로 50만원 외 8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해 8월 29일에는 이동 사용 분야의 기술기준 위반을 이유로 300만 원 외 6건을 처분하였고, 11월 8일에는 방사선관리구역 설치 및 운영 부적합을 이유로 100만 원 외 5건을 처분하였으며, 그 이후 12월 13일 방사선장해방지조지 미준수를 이유로 50만 원 외 25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1월 10일 폐기선원 관리 부적합을 이유로 50만원을 처분하였고, 2월 7일에 폐기선원 관리 부적합을 이유로 50만원 외 8건을 처분하였으며, 4월 4일에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 초과를 이유로 300만 원 외 11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해 5월 13일에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미실시를 이유로 300만 원 외 16건을 처분하였고, 6월 13일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기록 및 비치 미흡을 이유로 300만 원 외 6건을 처분하였으며, 6월 16일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 초과를 이유로 300만 원 외 3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상당수의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4년 2월 28일에 주계약자 품질보증계획서의 변경에 따른 신한울 1·2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개정 및 이에 따른 경미한 사항변경신고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 2015년 8월 24일에 월성 2·3호기 펌프 구매계약에 대하여 법정 신고기간(30일 이내)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안전과의 경우는 2012년 7월 31일에 고리 1호기 사건발생 관련정보 기록 누락을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 2013년 12월 2일 하나로 원전 채널 및 선원 점검 미실시

와 채널기능시험 미실시를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 2015년 3월 24일 한울 1호기 전원공급설비 교체 시 미신고로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 등 총 5건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체적인 과태료 처분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처분현황 (2011. 10. 26~2015. 6. 30)¹²⁾

부과일자	위반내용	위반조항	금액 (만원)
2014-02-28	주계약자 품질보증계획서 변경에 따른 신한울 1·2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 및 이에 따른 경미한 사항변경신고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기한 내 수행하지 않았음	제10조 제1항	300
2015-08-25	월성 2,3호기 펌프 구매계약에 대해 법정 신고기간(30일 이내)을 초과하여 신고함	제15조의2	300
2012-07-31	한울1 전원공급설비 교체 시 미신고	제20조	300
2015-03-24	고리4 화재 주수신기 설치위치 거짓신고	제20조	300
2012-07-31	고리1 사건발생관련 정보기록 누락	제25조	300
2012-10-29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 부적합	제53조	300
2012-11-08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미준수	제53조	75
2013-07-25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 부적합	제53조	100
2013-11-15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 불이행	제53조	200
2013-11-15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Co-60 선원 감량) 미수행	제53조	50
2013-12-17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및 SPOT 결과보고 부적합	제53조	300
2014-05-13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신고 미실시	제53조	300
2014-06-13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신고 부적합	제53조	300

12)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자료(수정 후 인용).

부과일자	위반내용	위반조항	금액 (만원)
2014-10-13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신고의 작업개시 후 신고	제53조	300
2014-12-23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 내용 미 준수	제53조 제1항 단서	50
2012-04-12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및 방사선원 반출입 기록 미흡	제58조	300
2012-08-16	방사선 작업일지 일부 미작성	제58조	300
2012-08-16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측정 미 실시	제58조	75
2013-05-06	업무대행실적 미 기록	제58조	50
2013-07-25	방사선안전관리 기록·비치 부적합	제58조	50
2013-12-17	방사선안전관리 기록 및 비치 미흡	제58조	150
2014-04-04	방사선안전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부적절	제58조	100
2014-06-13	방사선 안전관리 기록 및 비치 미흡	제58조	300
2014-10-13	방사성물질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기술기준 부적합	제58조	300
2015-03-22	안전관리 기록 및 비치 부적합	제58조	300
2015-03-30	방사성동위원소 오염물 배출기록 및 비치 미 준수	제58조	75
2015-06-02	방사선안전관리 기록·비치 미 준수	제58조	25
2012-04-12	방사선측정기 교정 미 실시	제59조	30
2012-08-16	이동사용의 안전관리 미 준수	제59조	300
2012-08-16	폐기대상 밀봉선원을 장기간 보관	제59조	75
2012-10-29	방사선조사기의 일일점검 미흡	제59조	300
2012-11-08	기준준수의무 위반(판매분야 안전관리)	제59조	75
2012-11-08	대행업체 현장의 방사선안전관리 부적합	제59조	75
2012-12-27	이동사용 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 기술기준 위반	제59조	300

제 2 장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개관

부과일자	위반내용	위반조항	금액 (만원)
2012-12-27	밀봉선원 취급 기준 위반 등	제59,98조	50
2013-05-06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표면오염도 측정 미실시	제59조	50
2013-07-25	폐기선원 관리 부적합	제59조	50
2013-08-23	판매자 기술기준 위반	제59조	75
2013-08-29	이동사용 분야의 기술기준 위반 (작업조편성)	제59조	300
2013-08-29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서 부적합	제59조	100
2013-11-08	방사선관리구역 설치·운영 부적합	제59조	100
2013-11-08	감마선조사장치 일일점검 및 기록비치 미흡	제59조	100
2013-11-15	방사선원 판매현황 지연보고	제59조	100
2013-12-13	방사선(능)측정기 교정미실시	제59조	50
2014-01-10	폐기선원 관리 부적합	제59조	50
2014-02-07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제59조	400
2014-06-13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방사선량률 측정 위반	제59조	150
2014-06-17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취급기준 위반	제59조	150
2014-09-15	업무의 대행절차 위반	제59조	50
2014-12-23	개인선량계 관리 미흡	제59조 제1·3항	50
2015-03-22	저장시설에 방사능 표지 미부착 및 주의 사항 미게시	제59조	300
2015-03-30	기술기준의 만족이 입증되지 않은 운반 용기 사용	제59조 제1항	50
2015-06-02	방사성물질 배출에 관한 기술기준 미준수	제59조 제1항	100
2013-07-22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위반	제70조	150
2012-04-12	방사선(능)측정기 교정 미실시	제71조	300

부과일자	위반내용	위반조항	금액 (만원)
2012-04-12	방사성물질 운반서류 미작성	제71조	100
2014-05-13	방사성물질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기술기준 부적합	제72조	300
2014-09-15	안전성 입증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운반 용기 사용	제72조	50
2015-03-30	방사성물질 운반서류 미작성	제72조	300
2015-06-02	포장 및 운반 관련 기술기준 미준수	제72조	100
2012-12-27	장해방지조치 위반(사용선원 주변의 방사선량률 측정관리 기준 미준수)	제91조	50
2013-12-02	하나로 원전 채널 및 선원 점검 미실시, 채널기능시험 미실시	제91조	300
2013-12-13	방사선장해방지조치(측정) 미준수	제91조	50
2013-07-22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시설의 방사선량률 측정 미흡	제91조	100
2013-07-22	건강진단 미실시	제91조	150
2013-12-13	방사선장해방지조치(측정) 미준수	제91조	50
2014-02-07	방사선량률 및 오염상황 측정 미흡	제91조	150
2014-04-04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 초과	제91조	300
2014-12-23	선량한도 초과자 발생	제91조 제2항	300
2015-03-22	방사선측정 부적합	제91조	300
2013-05-06	방사선작업개시 후 신규종사자 교육실시	제106조	100
2013-07-25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종사 전 교육훈련 미실시	제106조	100
2013-12-17	방사선작업종사자 작업 전 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제106조	300
2014-04-04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제106조	150
2015-06-02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미실시	제106조 제1항	100

제3장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의 분석

제1절 가스 관계법상 벌칙규정

1. 도시가스사업법

(1) 개관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제1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육성법적 의미와 가스의 공급·사용시설을 설치·유지에 관한 안전관리라는 규제법적 성격이 공존하는 분야의 법률에 해당한다. 여하튼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제3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제10조의2),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공사계획의 승인(제11조),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제출(제18조의3), 가스공급규정의 승인(제20조)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의 장(제5장)을 따로 두어 안전관리규정(제26조), 가스시설의 안전유지(제26조의2), 가스시설의 개선명령(제27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제28조),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제28조의2),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제28조의3), 안전관리자(제29조), 안전교육(제30조) 등에 관한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2) 행정형벌

첫째, 가스공급의 방해 및 장애 발생에 관한 행정형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

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1항),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2항),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제3항),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게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4항)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상에서 서술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결과적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제13항).

둘째, 허가·승인·신고·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9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제1호) 및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영위한 자(제2호)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에서도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1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한 자(제1호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한 자(제1호의3),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자(제2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제3호) 등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51조에서도 허가·신고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3조의2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도시가스사업법상 위반행위별 행정형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 도시가스사업법상 위반행위별 행정형벌¹³⁾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48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충전시설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3)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제 3 장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의 분석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④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	•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①의 죄를 범한 자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②의 죄를 범한 자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⑦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③의 죄를 범한 자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⑧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④의 죄를 범한 자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⑨ ⑤~⑧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결과적 가중범)	• (상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⑩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⑪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 공급 장애를 유발	
	⑫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변경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⑬ ①~④ 및 ⑩의 죄	• 미수범 처벌
49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영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영위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50	1. 가스도매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충전 사업을 영위 1의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영위 2.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 3-15. <생략>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1	1.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1의2.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1의3. 도시가스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 1의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 2-15. <생략>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다만, 1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2	<삭제>	
53	1. 가스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2. 가스공급시설의 공사 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공급규정의 변경 승인 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4.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다만, 5 또는 6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5.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6.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9. <생략>	
53-2	•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과태료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이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천연가스를 반입·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1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을 체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에 관한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제2호),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제2호의2) 등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지위 승계자(제1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제2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제3호) 등에 대하여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1호), 「주택법」 등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로서,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에 관한 통지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하지 아니한 시공자(제2호), 시·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제2호의2)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같은 조에서는 안전점검기록의 작성·보존의무 위반(제4항), 시설개선 권고 불이행(제5항), 안전조치 불이행(제6항) 등에 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표-7】 도시가스사업법상 위반행위별 과태료14)

조	위반행위	과태료
54 ①	1. 계약사실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이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및 천연가스반출입업자	• 3천만 원 이하
	2.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에 관한 계약체결 전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	
	2의2.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아니한 가스도매사업자	
	3.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	

제 3 장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의 분석

조	위반행위	과태료
	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5의2.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6.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의 제출 및 협의를 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7-17. <생략>	
54 ②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지위 승계자 2.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3.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4. 시공기록 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5.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 2천만 원 이하
	6-9. <생략>	

조	위반행위	과태료
54 ③	1.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	• 1천만 원 이하
	2.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시공자	
	2의2. 시·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2의3.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5. <생략>	
54 ④	• 안전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 500만 원 이하
54 ⑤	1.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 300만 원 이하
	2.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54 ⑥	•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	• 200만 원 이하

14)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4) 과징금

도시가스사업법에서도 전술한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변경과징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해당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고의나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끼친 경우,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소비하거나 공급·소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등(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해당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고의나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끼친 경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소비하거나 공급·소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등(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개 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제1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제4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제5조),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제5조의2),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제5조의3),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제5조의4), 사업 개시 등의 신고(제7조), 승계(제8조), 허가·등록의 취소(제9조), 공급자의 의무(제10조), 안전관리규정(제11조), 용기 등의 표시(제11조의2), 시설·용기의 안전유지(제13조), 안전관리자(제15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제16조의2),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제16조의3), 용기 등의 검사(제17조), 용기 등의 품질보장 등(제18조),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제18조의2, 제18조의3), 사용신고(제20조), 수입신고(제21조),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제23조의6) 등 다양한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형벌, 과태료, 과징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행정형벌

첫째, 고압가스시설 등의 손괴에 관한 것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8조에서는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1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

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2항)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의 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4항), 후자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둘째,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등 위반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에서는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제1호), 저장소 설치 허가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제2호), 용기 등 제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 등을 제조한 자(제3호),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제4호) 등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에서는 고압가스 제조 허가 및 저장소 설치 허가 또는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1호), 용기 등 제조 등록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또는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한 자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2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제8호)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제1호) 등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4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제5호) 등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표-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위반행위별 행정형벌¹⁵⁾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38	①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②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결과적 가중범)	• (상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제1항의 미수범	• 미수범 처벌
39	1.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저장소 설치 허가 또는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용기 등 제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 등을 제조한 자	
	4.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 고압가스 운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제 3 장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의 분석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6.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7의 협의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9. 7에 따른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10.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1.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13.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40		1. 고압가스 제조자나 저장소 설치자 또는 고압가스 판매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용기 등 제조자, 고압가스 수입업자나 고압가스 운반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	
			3.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고압가스 판매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4.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7.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 등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8.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9.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0.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41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2	1. 용기 등을 수리할 수 없음에도 수리를 한 자 또는 수리를 하는 경우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2. 사업 개시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	
	3.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 등	
	4.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회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7.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자	

(3)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일정한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제조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제1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제2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 등(제3호),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제4호) 등에 대하여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제1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제2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제2호의2),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제3호의2) 등

1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고압가스 제조자 및 저장소 설치자 또는 고압가스 판매자로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제1호), 일정한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제조자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제2호) 등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자 등의 지위 승계자(제1호),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등(제2호)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표-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위반행위별 과태료¹⁶⁾

조	위반행위	과태료
43 ①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고압가스 제조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	• 2천만 원 이하
	2.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3.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5. 사용방법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6.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 등을 수입한 자	

제 3 장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의 분석

조	위반행위	과태료
	7.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3 ②	1.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 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 1천만 원 이하
	2.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2의2.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3.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자	
	3의2.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4.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등을 위반한 자	
43 ③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고압가스 제조자와 저장소 설치자 및 고압가스 판매자	• 500만 원 이하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일정한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제조자	
	3.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용기 등 제조자와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고압가스 운반자	
	4. 시설의 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조	위반행위	과태료
43 ④	5.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 300만 원 이하
	6. 용기 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자	
	2.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	
	3.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등	

(4) 과징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경우도 영업 등의 정지 또는 제한에 갈음하는 변형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의2에서는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처분에 대신하여 4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2]에서는 연간매출액(제2호 가목)과 연간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냉동제조자(제2호 나목)로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 개 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함”(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액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제5조), 저장소의 설치허가(제8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제9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제10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제17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제20조), 충전량 등의 표시(제23조), 공급규정(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제26조, 제2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액법 제5장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제31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제32조),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제33조), 안전관리자(제34조), 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제35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제36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제37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제38조), 안전교육(제4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액법에서는 이상에서 서술한 다양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형벌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행정형벌

첫째, 가스시설의 손괴 등에 대한 행정형벌로서, 액법 제65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

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항), 그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제8항). 또한 같은 조에서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제3항), 이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그리고 같은 조에서는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그 밖에서 액법 제65조에서는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한 자(제5항),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한 자(제7항) 등에 대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액법 제66조 이하에서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액법 제66조에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액법 제67조에서는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자료를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액법 제68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

업을 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제1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위탁 운송사업을 한 자(제3호)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액법 제69조에서는 충전량 등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인 자(제2호), 정기검사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제4호)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액법 제70조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제1호) 등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액법 제71조에서는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제1호),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개선 또는 철거를 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제7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제8호) 등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액법에서는 다양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상에서 서술한 액법상 행정형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0】 액법상 위반행위별 행정형벌17)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65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①의 죄를 범한 자(결과적 가중범)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③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한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상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등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⑥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등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⑦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등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⑧ ①과 ⑤의 죄의 미수범 처벌	• 미수범 처벌
66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②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 3 장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의 분석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자료를 누설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한 자 4.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5.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6.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가스공급자가 가스수요자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설과 용기의 안전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 8.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p>9. 가스용품의 판매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p> <p>10.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p> <p>11. 조정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p> <p>12.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p>	
69	<p>1. 충전량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다른 허용 오차를 넘어서 계량한 자</p> <p>2. 충전량 등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인 자</p> <p>3.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p> <p>4.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p> <p>5.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p>	<p>•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p>

제 3 장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의 분석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6.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70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에 관한 신고의무 및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 선임의무를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71	1.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4.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의 수요자에 대한 시설개선 권고의무를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5.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6.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중지 또는 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7.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경우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개선 또는 철거를 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8.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3) 과태료

액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제2호) 등에 대하여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제1호),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제2호)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제1호), 사업개시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제2호),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제6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제7호), 시공기록 등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제11호) 등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제1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

17) 액법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제3호) 등에 대하여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액법상 과태료 규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액법상 위반행위별 과태료¹⁸⁾

조	위반행위	과태료
73 ①	1.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가격 안정,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업무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 2천만 원 이하
	2.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73 ②	1.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 1천만 원 이하
	2.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3.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 대한 출입 조사를 거부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73 ③	1.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 300만 원 이하
	2. 사업개시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3.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지위 승계자	
	4. 공급규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조	위반행위	과태료
	5.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6.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7.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8. 가스용품의 제조 공정과 자체검사 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9.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10.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1. 시공기록 등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2.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3.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14.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5.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6.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 대한 출입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제 3 장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의 분석

조	위반행위	과태료
	17.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8.판매가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73 ④	1.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시설개선 미이행 시 가스공급 차단 등의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4.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자 5. 가스용품 개조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 6.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7.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8.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9.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0.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	• 200만 원 이하

조	위반행위	과태료
	11.위해방지 필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2.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의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3.액화석유가스의 수급·가격 안정,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4.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73 ⑤	1.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의 액화석유가스 공급 중지 또는 제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 100만 원 이하
	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4) 과징금

액법에서도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변형과징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선 액법 제14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관한 과징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액법 제 14조에서는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고의나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18) 액법 제73조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제13조 제1항 제1호),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13조 제1항 제5호) 등으로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이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에 대신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다음으로 액법 제22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액법 제22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제21조 제2항 제3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제21조 제2항 제4호) 등으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같은 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와 함께 같은 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항).

제 2 절 기타 입법례상 벌칙규정

1. 위험물 안전관리법

(1) 개 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¹⁹⁾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제6조)에 관한 허가를 비롯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제8조), 완공검사(제9조), 위험물안전관리자(제15조), 탱크시험자의 등록(제16조), 예방규정(제17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제18조),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제20조, 제21조), 출입·검사(제22조),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제22조의2),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제23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제24조),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제26조),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제27조), 안전교육(제28조) 등을 규정하여, 매우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구조를 취하고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이러한 각종 의무에 대한 위반행위별 벌칙(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제39조)와 함께 과징금(제13조)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행정형벌, 과태료 및 과징금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9)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제2조 제1호), 아염소산염류 등과 같은 산화성 고체(제1류), 황화린 등과 같은 가연성 고체(제2류), 칼류 등과 같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속성물질(제3류), 특수인화물 등과 같은 인화성 액체(제4류) 등으로서(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물질을 의미한다.

(2) 행정형벌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3조에서는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이하 “제조소 등”이라 함)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러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제34조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항), 이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제35조에서는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제1호)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6조에서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1호),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제3호) 등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7조에서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제1호),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제2호) 등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다양한 행위유형별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2】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반행위별 행정형벌²⁰⁾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33	①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①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상해)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사망)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4	①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①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35	1.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	
	3.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4.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를 받은 자	
	5.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제 3 장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의 분석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6.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를 받은 자 7.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8.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36	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3.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4.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를 받은 자 7.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를 받은 자 8.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10.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를 받은 자	
	11.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탱크시험자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7	1.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를 받은 자 4.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자격이 없거나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위험물운송자 또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없이 위험물을 운송한 자	

조	위반행위	행정형벌
	6. 출입·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과태료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9조에서는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한 자(제1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제2호), 위험물의 품명·수량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제3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제4호), 제조소 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제5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제6호),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제7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제8호),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제9호)에 대하여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4) 과징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도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변경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3조에서는 시·도지사로부터 하여금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제12조 제1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

20)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제12조 제2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제12조 제4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제12조 제6호, 제7호)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2. 송유관 안전관리법

(1) 개 요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²¹⁾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송유관 안전관리법에서는 공사계획의 인가(제3조), 완성검사(제5조), 안전관리 규정(제6조), 안전관리자(제7조), 안전검사(제8조) 등과 같은 다양한 안전규제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행정형벌(제13조부터 제15조까지)과 과태료(제17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술한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과징금 처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 및 과태료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행정형벌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21) 송유관 안전관리법에서는 “송유관”을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제2조 제2호),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항공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 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등을 제외한 것”(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제1호),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제2호)에 대하여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미수범 처벌[제6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제1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송유관설치자 등의 승낙 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미수범 처벌[제6항]). 위의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위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5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서는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송유관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항),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제2항).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제1호),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운영한 자(제3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제4호),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5호)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송유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과태료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경미한 공사나 재해복구공사 및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한 경우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1호), 인가받은 공사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2호),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호),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제7조 제3항), 이에 따르면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100만 원을,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300만 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 4 장 벌칙규정의 종합검토와 개선방안

제 1 절 행정형벌 개선방안

1. 헌법적합성의 강화

(1) 행정형벌과 헌법원리

첫째,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자력안전법상 행정형벌을 살펴보기로 한다.²²⁾ 원자력안전법 제113조는 원자로의 파괴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자, 전쟁·천재지변에 의하여 원자로가 파괴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각각 사형·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매우 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고의·과실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예비·음모죄도 본형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전술한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법 등 대부분의 유사 입법례에서는 공통적으로 고의·과실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원자력안전법은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형과 무기징역이라는 국내 최고의 형벌을 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과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22) 여기에서 말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또한 최소한의 제안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4개의 세부원칙, 즉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서술 중에서 “ ”안의 내용은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07, 10면.

또한 원자력시설의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가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법 등에 따른 시설의 파괴 등으로 입는 손해·피해와 비교한 경우, 그 광범성이나 지속성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이 고의나 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과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둘째,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13조 제1항에서는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에게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쟁·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유기징역 없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의 안전”과 “문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법적 개념이 매우 추상적·포괄적이어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가능성이 지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자의적 법집행의 방지”²³⁾ 등을 위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법 제113조 제1항과 제2항은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히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경우에만 처벌하여, 앞에서 살펴본 가스관계법 등의 유사법제와는 다른 입법상태로 보인다. 원자력안전법은 평

23) 헌법재판소도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데,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 1990년 4월 2일 결정, 89헌가113 등.

상시 또는 전쟁·천재지변·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원자로의 파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법에서는 해당 법령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손괴 및 기능장애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손괴 및 기능장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가해진 경우에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원자로의 파괴로 인한 피해의 속성을 고려하면 다른 분야의 유사 법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손괴보다 피해의 범위가 넓고, 세대 간 지속된다는 등의 특성을 가지므로, 다른 유사 입법례보다 원자력시설의 파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원자로의 파괴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원자로 파괴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일탈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²⁴⁾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114조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의 부당한 조작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원자력안전법 제114조 제1항에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의 부당한 조작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의 부당한 조작

24) 여기에서 말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란 “법령체계의 정합성의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 상호 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법령 상호간에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요청의 하나”라고 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전계), 18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법의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손괴, 기능장애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손괴 및 기능장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가 가해진 경우에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의 부당한 조작이 원인이 되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과 그 위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의 부당한 조작 자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현행법이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의 부당한 조작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법 등과 비교하면,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일탈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2) 헌법적합성 강화방안

지금까지 원자력안전법상 행정형벌 관련규정, 즉 제113조 및 제114조에 관해서는 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즉, 제113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형법규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원자력안전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어”²⁵⁾ 앞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또한 제114조와 관련해서는 “범죄의 요건이 불명확하고, …… 제2항은 형법의 상해치사와 내용 및 법정형도 동일”하다는 이유로 삭제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함께 제113조 및 제114조에 관해

25) 정환삼·양맹호·김승수·윤성원·이대성, 원자력 관련법률의 벌칙규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전계), 132-134면. 서술 중에서 “ ” 안의 () 부분은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한 것이다.

서는 “제113조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므로, 범죄의 객체, 구성요건 행위, 양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²⁶⁾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 또한 규정의 재검토를 통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위에서 살펴본 헌법적 검토결과를 고려할 때, 원자력안전법 제113조와 제114조의 경우 폐지하는 방향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처벌수위의 적정화

(1) 처벌강도의 부적절

첫째, 원자력안전법 제108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직무종사자 또는 위원회 위원, 관련 공무원에게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115조는 제108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밀누설금지의무는 보통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 개인의 명예 등과 결부되거나 국가안보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비밀유지로서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것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원자력관련 직무종사자, 위원회 위원, 관련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은 대부분 국가안보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액법 제67조에서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과 액법의 경우 관련자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은 그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으며, 국가안보나 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도 양 법의 가치와 보호법익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26) 정 훈·류권홍, 원자력안전법령상의 원자력분야 규제체계 정합성 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정책연구보고서), 2015, 174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원자력안전법 제115조의 처벌강도는 액법 제67조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둘째, 원자력안전법 제116조 제1호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허가의무 위반, 운영허가의무 위반, 사업허가위무 위반, 사용 및 소지허가의무 위반,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호는 각종 기술기준 미달 및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시정 등 각종의 안전조치의무를 명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116조 제1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사업법 제49조에서 각종 허가의무 및 등록의무 위반의 경우 처해지는 처벌의 내용과 동일하다. 원자력 시설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의 문제는 도시가스의 경우와는 달리 허가 규제 또는 등록규제의 목적과 규제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가능성과 정도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의 경우가 도시가스의 경우보다 위험성이 크고 지속적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16조 제1호의 각종 허가·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를 도시가스사업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원자력안전법 제117조는 변경허가 및 승인의무위반, 검사의무 위반, 검사거부 및 방해·기피, 제한구역 출입통제명령 위반, 원자력 관련 외향선박에 대한 규제준수 의무, 보고 및 서류제출 의무위반, 방사성폐기물 처리제한 위반, 원자로 및 취급조건(면허조건) 위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물질 도난, 분실 등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소지 및 양도·양수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법에서도 각종 변경허가 및 승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허가의무 위반의 처벌과 동일하고, 도시가스사업법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약하다. 원자력 시설의 건설·운영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 승인 의무는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법에 따른 각종 시설의 허가 및 변경허가 등과 비교하여 규제대상, 규제목적, 금지해제 등의 사유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2) 처벌체계의 획일성

원자력안전법 제117조에서는 ㉠ 변경허가 등의 위반, 방사성폐기물 처리제한 위반, 원자로운전 및 취급조건(면허조건) 위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물질 도난·분실 등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제한의무 위반의 경우와 ㉡ 각종 보고 및 서류제출의무 위반, 제한구역출입통제명령 위반 등을 모두 동일한 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의 경우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동일한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행정형벌의 획일성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적정화방안의 제시

첫째, 원자력안전법 제115조의 처벌수위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법 제115조와 관련해서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제115조가 형법규정과 달리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이 형평상 바람직한 것이지 의문이 제기된다”²⁷⁾고 하여 그 폐지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비밀누설금지의 주체, 비밀유지의 대상, 비밀유지의 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²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과 위에서 서술한 불필요하게 과도한 처벌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자력안전법 제115조의 경우, 폐지하거나 액법 제67조와 같이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처벌수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원자력안전법 제116조의 처벌체계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법 제116조 제1호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과 동일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한 허가규제 또는 등록규제의 목적과 규제의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과 정도를 고려하여, 도시가스사업법보다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목적의 충실한 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원자력안전법 제117조의 처벌체계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법 제117조의 경우, 변경허가, 승인의무 등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동일하거나 도시가스사업법보다 약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시설 등의 중요성, 피해의 특수성 등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벌수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117조의 경우는, 규제의 형평성·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 변경허가 등의 위반, 방사성폐기물 처리제한 위반, 원자로

27) 정환삼·양맹호·김승수·윤성원·이대성, 원자력 관련법률의 벌칙규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전계), 134면.

28) 정 훈·류권홍, 원자력안전법령상의 원자력분야 규제체계 정합성 분석(전계), 175면.

운전 및 취급조건(면허조건) 위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물질 도난·분실 등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제한의무 위반의 경우와 ㉔ 각종 보고 및 서류 제출의무 위반, 제한구역출입통제명령 위반 등을 그 처벌의 종류와 양형에 있어서 차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고, 물론 ㉕의 경우가 ㉔의 경우보다 처벌을 통한 가벌성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현재보다 처벌수위를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제2호에서는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제2호)에 대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제2호는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이나), 제10조 제4항은 부지의 승인에 따른 공사허용 규정이며, 승인의무 위반에 관한 규정은 제10조 제3항……(이므로), 「제10조 제4항」은 「제10조 제3항」²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더하여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4항 자체에 대한 검토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제10조 제4항 자체가 임의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승인의무의 부과와 승인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벌칙”이라는 관계설정이 애매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자력안전법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이 경우, 제10조의 취지가 건설허가에 관한 것이므로, 부지의 사용이라는 의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의 의미와 동일

29) 정 훈·류권홍, 원자력안전법령상의 원자력분야 규제체계 정합성 분석(전계), 178면.

30) 제10조 제2호를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117조에 “제10조 제4호를 위반하여 부지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지를 사용(하거나 공사 등을)한 자”라는 호를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러한 의미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제10조(건설허가) ③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후에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건설허가) ③ <u>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에 부지를 사용하려면 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제 2 절 벌칙운용의 합리화

1. 처벌체계의 문제점

(1) 처벌의 합리성 부족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안전에 관한 위반행위를 유형화해 보면, 행정형벌만 가능한 위반행위가 있는 반면, 행정형벌과 함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한 위반행위가 있다. 이로부터 어떠한 특성을 가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형벌과 함께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떠한 특성을 가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형벌로만 처벌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적 법 적용실태를 보아도, 행정형벌과 함께 과징금 처분 규정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시 과징금 처분을 바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³¹⁾ 행정형벌만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벌칙

31) 즉, 행정형벌과 과징금 처분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행정형벌은 적용하지 않고 과징금만 처분하고 있다.

적용을 바로 하지 않고, 해당 위반행위가 시정되도록 계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계도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덜 중한 위반행위는 계도기회 없이 과징금 처분을 바로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반면, 처음부터 허가조차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계도기간(시정·보완명령)이 주어지고, 그 기간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의 궁극적 목적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 보호에 있고(제1조), 처벌·처분은 단지 그러한 입법목적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면, 실제 현장에서 효율적인 법 적용·시행이 가능하도록 행정형벌 조항만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 등에 따라 행정형벌 대신에 과징금·과태료 등으로 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처벌의 체계성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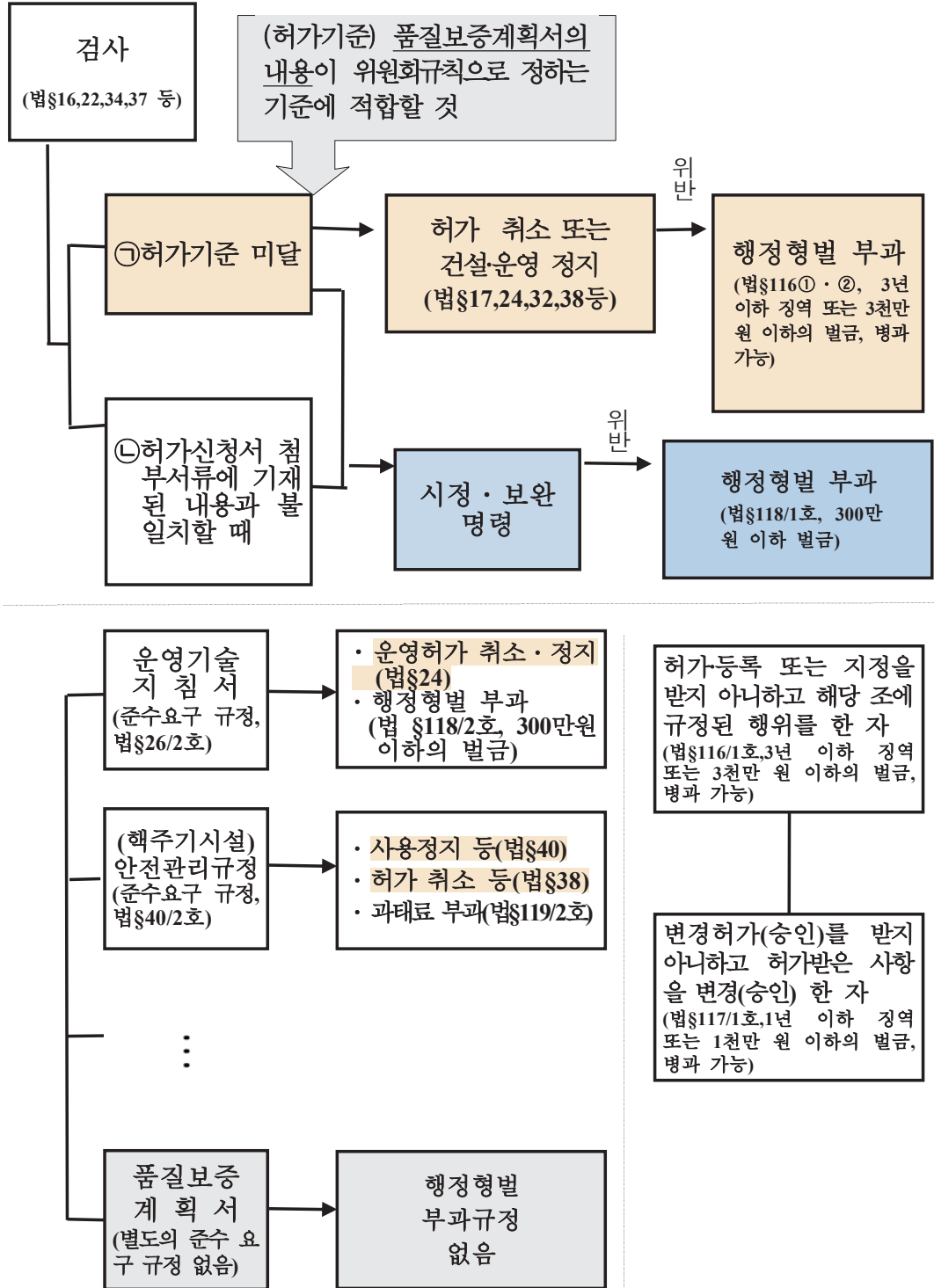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 제22조, 제34조, 제37조에 따른 검사 결과, ㉠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 허가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할 때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 위반 시 행정형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18조 제1호)에 처할 수 있다. ㉠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7조, 제24조, 제32조, 제3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소지·사업 등 행위를 하거나,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에게는 행정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처할 수 있다. ㉔의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위반과 관련해서는, 첨부 서류 중 운영기술지침서(핵연료주기시설 안전관리규정) 등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직접 규정(법 제26조 제2항, 제34조, 제40조 제2항)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허가 취소·정지(제24조), 행정형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18조 제2호)에 처할 수 있다(핵연료주기시설 안전관리규정 위반 시는 사용정지 등[제40조], 허가 취소 등[제38조], 3천만 원이하 과태료[제119조 제2항] 부과 가능). 이상에서 서술한 원자력안전법상 (품질보증)감사에 따른 행정형벌(과태료) 부과절차는 다음 면의 그림과 같다.

이와 관련한 실제적인 운용사례를 살펴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의 수행여부를 품질보증검사(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7호)에 따라 지적사항을 발급(시정·보완 명령)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품질보증검사 지적사항의 미이행에 따른 행정형벌의 부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질보증계획서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 직접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어떤 경우 일차 시정·보완 명령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의 비체계성으로 인하여 법의 해석·집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품질보증계획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운영기술지침서와 같이 직접 벌칙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²⁾

32) 이상에서 서술한 (1) 처벌의 합리성 부족 및 (2) 처벌의 체계성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편의상 2. 처벌의 합리화방안 및 3. 처벌의 체계화방안으로 구분하여 각각 검토 후 도입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품질보증)검사에 따른 행정형벌(과태료) 부과절차³³⁾



33)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자료(수정 후 인용).

2. 처벌의 합리화방안

(1) 제재수단의 성격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다양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위반행위는 벌칙과 함께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떤 특성을 가진 위반행위는 벌칙만 처해지는지에 대한 체계적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부터 각 제재수단의 성격을 분석한 후, 그 특성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다. 첫째, 원자력안전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기본적으로 영업정지 처분대상 위반행위라 하겠다.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량사항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1]에서 그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둘째, 행정형벌인 벌칙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검사의 기소 및 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에 의해 부과되는 제재로서, 행정관청이 검사에게 위반사실 등을 통보하더라도, 검사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이 인정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1조와 같이 전속 고발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³⁴⁾ 행정관청의 고발이 없더라도 검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등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셋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그 부과절차에 대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고발)에서는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항)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행정관청에는 부과여부에 대한 재량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부과금액에 대한 재량만 인정되며, 그 부과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2]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중복부과의 개선

어떠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중 어느 제재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는 실정법상 확립된 원칙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사한 위반행위 간의 형평성 확보 및 과도한 제재처분의 완화 등을 위하여 의무위반행위를 “영업수행상의 의무”³⁵⁾ 위반과 “행정협력적 의무”³⁶⁾ 위반으로 구분하여 원칙적인 제재유형을 결정하고, 개별적인 의무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제재유형을 선택하고 있다. 즉, 제재수단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영업정지처분과 과태료의 선택기준과 관련해서는 영업수행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형벌과 과태료의 선택기준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행위³⁷⁾는 과태

35) 영업수행상의 의무로는 ㉠ 변경허가, 변경등록, 변경신고(행정관청의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를 할 의무, ㉡ 인적·물적 기준을 유지할 의무, 영업 개시의무, 표시·게시·공고의무, ㉢ 교육의무, 검사의무, 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 명의대여금지의무, ㉣ 설명의무, 건강검진 수진의무, 보험가입의무 등 준수사항(작위의무) 이행의무, ㉤ 결격자 선임금지, 위해식품 판매 금지 등 금지의무(부작위의무)를 지킬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36) 행정협력적 의무로는 ㉦ 변경등록·신고(실태파악을 위한 단순 보고적인 것에 한함) 의무, ㉧ 승계·휴폐업·재개신고, 보고·자료제출, 조사·검사 등에 협력할 의무, ㉨ 면허증 등의 휴대·반납·갱신의무, 장부의 기록·보존(행정관청의 감독 목적을 위한 것에 한하고, 타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록보존은 영업수행상의 의무로 분류) 등을 들 수 있다.

37)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전개), 500-501면 참조.

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의 경우도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116조 제1호),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119조 제1항 제1호)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각각 제재수단을 구분하고 있다.

다만, 행정형벌과 과태료의 중복 부과는 입법권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³⁸⁾, 이를 중복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상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원자력안전법 제118조 제3호 및 제11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제28조 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형벌 부과대상 위반행위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중복적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 승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인가 경미한 위반행위인가를 기준으로 원자력안전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상 행정형벌인 벌칙규정만을 남겨두고 과태료에 관한 부분은 삭제해야 할 것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³⁹⁾

38)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헌재 1994. 06. 30 결정, 92헌바38)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39) 그 밖에도 과태료 부과실태를 보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에 따른 “원전 채널 및 선원 점검 미실시, 채널기능시험 미실시”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채널기능시험 미실시는 “영업수행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

(3) 시정기회의 부여

일반적으로 “시정(조치)명령”이란 “특정한 과거의 법규위반에 대하여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구체적인 행정작용”⁴⁰⁾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정명령은 “현재의 법 위반행위 중단 및 향후 유사행위의 재방 방지·억제”⁴¹⁾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강학 상 하명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형벌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과 함께 많은 법령에서 위반행위의 적법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의 운용에서도 더 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통한 계도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는 계도기회 없이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제재수단은 본질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재를 하는 것보다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경우도 다수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시정기회의 부여 여부 및 입법형식은 위반행위 및 제재수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서 제재처분의 부과 여부 및 제재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로, 해당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과징금)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0) 이원우, 법령상 부작위의무(금지행위)의 반복적 위반과 시정명령 위반의 판단기준,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1호(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8), 124면. 이 시정명령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위반행위로 발생하여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위법상태”이지만,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장래의 위반행위”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 2003. 2. 20, 2001두5347.

41) 이희정, 사후규제에 있어 시정명령의 기능에 관한 시론,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8), 164면(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1]을 개정하여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이 아니라 “경고처분”을 하도록 하거나, 아래의 식품위생법과 같이 일반적 감면사유를 규정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도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적 감면사유 관련규정】

제45조(위해식품 등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둘째, 과태료의 경우는 법률의 입법형식상 “...부과한다”로 되어 있어 기속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감경범위를 제한하고 있다.⁴²⁾ 따라서 위반행위별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사후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로서 과실 등 참작할 만한 사유로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

4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서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 등인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같은 조에서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제2항).

이다. 셋째, 행정형벌의 경우는 기소편의주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재량권이 검사에게 인정되므로, 법의 집행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양태,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벌칙규정과 과징금 처분규정이 있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영업정지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른바 “경고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벌칙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위반사실을 검찰에 통보하여 처벌절차를 개시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계도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재를 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계도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제재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점은 법률규정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제도의 운영상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행정형벌의 위하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성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강한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경우, 실제 집행 과정에서 행정형벌이 부과되지 못하고, 계도 등만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원자력안전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형벌의 비범죄화

원자력안전법상 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형벌인 벌칙 대신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벌칙규정은 “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⁴³⁾으로서, 행정형벌 외적인 수단으로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43)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전개), 454면.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의무의 내용적 성격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의 양태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형벌인 벌칙이 아니라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행정형벌의 부과 여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법집행 단계에서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행정형벌 대신 과징금·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고, 과태료는 기속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아래의 폐기물관리법과 같이 원자력안전법에서도 가능한 한 위반행위의 양태나 결과 등에 따라 그 제재수단을 달리하도록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및 행정형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입법사례)】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p>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3. 처벌의 체계화방안

(1) 입법적 사각지대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제1조)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설허가 내지 운영허가 등을 받을 때 품질보증계획서, 운영기술지침서, 안전관리규정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기술지침서 및 안전관리규정은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품질보증계획서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서는 건설허가 등의 요건으로 품질보증계획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제4호). 또한 같은 법 제102조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단독업무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운영기술지침서, 안전관

리규정 및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118조 제2호). 이와 같이 품질보증계획서의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로 종업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준수의무에 관한 규정 및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입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2) 사각지대의 해소

품질보증계획서에 관한 준수의무의 부과와 그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의 부과에 있어서는 원자력안전법의 입법목적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법의 입법목적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무이거나 관련성이 높은 의무인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해당 입법목적 달성에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입법목적의 달성과 관련하여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기술지침서 및 안전관리규정의 경우에는 해당 조문의 제1항에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체계로부터는 해당 의무가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의 일환으로 규정된 것이고, 그 의무는 원자력안전법의 입법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무이며, 처벌규정의 강도에서 안전관리규정에 비하여 운영기술지침서가 입법목적과의 관련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품질보증서에는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

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와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조직과 그 기능(제1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제2호),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와 그 업무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내용(업무별 적절한 장비의 사용, 청결상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적 환경, 업무수행에 필요한 선행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의 충족기준, 그 밖에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조건에 관한 사항)(제3호)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품질보증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관리, 특수작업공정, 특수시험, 특수장비, 공구, 숙련도, 검사 또는 시험에 의한 품질확인의 필요성(제1호부터 제7호까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운영기술 지침서 작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1호)을 보면,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에 대한 물리적 방어벽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변수의 안전제한조치를 기술하도록 하는 등 원자로 운영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법상 품질보증시스템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검사를 강화하면 할수록 불량품의 수는 줄일 수 있으나, 제품의 근본적인 품질제고는 어렵기 때문에 불량품을 구분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예방적 개념을 도입한 것”⁴⁴⁾이다. 이러한 품질보증시스템에 입각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상 허가를 받을 때 품질보증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품질보증계획서를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라는 원자력안전법의 입법목적에 달성함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을 운영기술지침서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는 근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실태 등을 고려

44) 원전 품질보증, 어떻게 이뤄지나, 에너지신문(2015.6.18.) [방문일자 : 2016.6.2.]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13>>.

하여 전문적으로 결정하여 할 문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다만, 품질보증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품질보증계획서 준수 의무는 운영기술지침서 준수 의무보다는 경미한 의무로 보이기 때문에,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형벌보다는 안전관리규정 준수 의무의 위반과 같이 과태료의 부과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사고 및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예방을 고려하고, 불량도 등 행정현실에 비추어 품질보증계획서 준수 확보가 간절하게 요청되는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는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내용 및 부과실태, 유사 입법례의 벌칙규정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선행 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선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선행 연구와는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벌칙규정의 현실적 운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행정형벌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폐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벌칙규정의 운용실태에 입각하여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종합성 또는 체계성의 부족이라는 이 연구의 한계를 지적받을 수도 있겠으나, 기존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독자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형벌의 범죄억제효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 등의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행정형벌로 인하여 행정상 의무위반행위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안전법의 수범자는 주로 원자력사업자 등 기업으로서, 이러한 수범자가 원자력안전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그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동기형성과 행위를 보면, 원자력안전법상 의무위반행위는 기업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이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 등의 행정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행정상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행정형벌인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기업에 대하여 경제적 손질을 부담시키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원자력안전법상 징역이나 벌금 등의 행정형벌로 처벌되는 행위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 도모”라는 원자력안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행정상 의무위반행위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고, 규범의 집행력과 신뢰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행정상 의무위반행위를 전적으로 비범죄화하기 보다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행위로 점차 확대·전환하는 것이 기업범죄의 특성상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현실적으로 적합할 것이다. 다만, 기존에 행정형벌로 처벌되던 의무위반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과태료나 과징금의 부과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추상적으로 평가한 불법의 정도와 위반사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결정해야 할 것이다.⁴⁵⁾

둘째, 법정최고형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무부 소관법률이나 균형법 등의 국방부 소관법률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의 국가정보원 소관법률에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전형적인 행정법령에 해당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문화재청 소관) 제32조,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소관) 제93조, 방

45)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는 독일의 원자력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질서위반금(Bußgeld)과 질서위반법 제30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질서위반금”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성폐기물 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39조 제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제47조 제6항,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소관) 제44조 제2항, 항공법(국토교통부 소관) 제157조 및 제158조, 항공보안법(국토교통부 소관) 제39조 및 제40조, 항공안전법(국토교통부 소관, 2017년 3월 30일 시행예정) 제138조 및 제139조에서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안전법을 비롯한 원자력관계법은 법무부 소관법률 등을 제외하고 몇 안 되는 전형적인 행정법령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적 원리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원자력안전법상 행정형벌 관련규정 및 원자력 관계법령을 선제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다른 분야 관계법령의 헌법적합성 강화를 주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논문 및 단행본

강문수·이순태·나채준, 과징금·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원자력안전위원회(정책연구보고서), 2013.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제14판), 법문사, 2010.

박영도·강문수,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07.

이원우, 법령상 부작위의무(금지행위)의 반복적 위반과 시정명령 위반의 판단기준,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1호(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8).

이천현·권수진, 행정형벌의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이희정, 사후규제에 있어 시정명령의 기능에 관한 시론,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8).

정환삼·양맹호·김승수·윤성원·이대성, 원자력 관련 법률의 벌칙 규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2012.

정 훈·류권홍, 원자력안전법령상의 원자력분야 규제체계 정합성 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정책연구보고서), 2015.

2. 기 타

헌재 1990년 4월 2일 결정, 89헌가113.

헌재 1994. 06. 30 결정, 92헌바38.

참 고 문 헌

대법 2003. 2. 20 판결, 2001두5347.

원전 품질보증, 어떻게 이뤄지나, 에너지신문(2015.6.18.)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13>>. [최종 방문일자 : 2016.6.2.]